

소매물가조사지침

1979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소매물가조사지침

1979

차 례

1. 물가조사의 의의	3
2. 조사품목	6
3. 품질규격 및 단위	7
가. 품질규격	7
나. 품질규격 변경	7
다. 단 위	8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9
가. 조사지역	9
나. 대상처	9
다. 대상처 선정기준	9
라. 보조대상처	10
마. 대상처 변경	10
5. 조사시점	11
6. 조사방법	12
7. 조사요령	12
8. 품질품목처리	12
9. 조사표류 기입요령	13
가. 소매물가 조사표	13
나. 영화관람료 조사표	14
다. 방세 조사표	15

라. 납입금 확인서	16
10. 조사서류 발송	16
가. 조사포 발송	16
나. 질의 조회 응신	16
11. 명부 작성	17
가. 가격 조사부	17
나. 대상처 명부	17
부 록	19
I. 품목 및 품질규격	19
II. 조사상 문체품목의 참고사항	48

1. 물가조사의 의의

오늘날의 교환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가 교환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물자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는 단일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측정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의 개별상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라 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로서 표현되고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판정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은 물가지수로서 표시되는데, 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물가를 기준(=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화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은 변동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 감퇴에 의하여 국민경제생활은 궁핍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은 풍족하게 된다. 결국 화폐소득에 대응하는 물가수준의 변동은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격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거래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종합적으로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로 구별

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단계별로 몇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를 위한 가격 자료로 쓰고 있는 도매가격은 제1단계의 거래에서 집약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Primary market price) 을 의미한다. 소매가격은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근대화되어 있고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제1차 도매가격에서 최종 소매가격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짧아지고 유통마진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 물가는 안정되며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나,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 내지 무질서한 경우에는 거래단계별 가격질서가 문란하여 단계적 물가 수준의 변동은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 경제생활도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소매물가와는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란 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이 종합된 것으로서 직접 가게에서 지출한 수량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서어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가계소비지출 계정에서 상품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류등을 위시한 완전생산재에 있어서

는 소매가격은 형성되나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편 서어비스 요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결국 소매물가는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고 소비자 물가는 가계소비지출을 중심으로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상의 실제적 필요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 공표하고 있는 서울 및 전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자료는 소매가격 및 서어비스 요금인바,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훗가)이 아니고 소매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을 의미하고 그것은 개념상 소비자 가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수 편제에 있어서는 동질의 가격계열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구입가격만을 추적한다는 것은 동일 가구안에서의 소비지출의 품목과 구성비가 시제열 선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사기술면에 있어서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정확한 가격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 편의상 소매가격을 포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의 가격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매가격자료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상의 소비자물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조사 수집된 것이라야 한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기준의 지수 개편으로 가격의 비교 기준과 가중치의 기준을 1970년에서 1975년도로 변경하였고, 조사품목도 338개 품목에서 349개 품목으로 늘어

나게 되었으며, 조사지역도 서울을 비롯한 32개 도시에서 성남, 부천, 안양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35개 도시로 확대되어 약 4,100여개의 대상처에서 가격을 수집하게 되었다.

2. 조사 품 목

도시가계 지출중 비중이 큰 품목으로서 지출구성비가 $\frac{1}{10,000}$ 이상되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49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도시별 조사 품목수

도 시	총품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전 도 시	349	131	60	7	57	94
서 울	348	131	60	7	57	93
부 산	349	131	60	7	57	94
대 구	348	131	60	7	57	93
인 천	347	130	60	7	57	93
대 전	345	130	60	6	57	92
광 주	345	130	59	6	57	93
전 주	344	130	59	6	57	92
춘 천	341	130	57	6	57	91
청 주	341	130	57	6	57	91
기 타 시	339	129	56	6	57	91

3. 품질규격 및 단위

가. 품질규격

1) 가격제열의 동질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 가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생산지, 상표 등, 그 상품의 가격이 다양하므로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격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라) 시장출회량이 많은 규격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량 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나. 품질규격 변경

이미 지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 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3회 조사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계속

신가적으로 조사한다.

-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비닐봉지 제품이 캔 포장으로 된 경우)

- 3) 출회가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 4) 소비자 수요가 극소한 경우
- 5) 거래단위의 관습이 달라지는 경우

“예” (곡수가 1근으로 거래되던 것이 1kg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단 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를 책정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나 거래 단위가 상이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예”

- 1) 6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6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 기입한다.
- 2) 콩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100원으로 거래된다면 환산하여 167원으로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4. 조사 지역 및 대상처

가. 조사지역

서울을 비롯한 35 개시에서 조사한다.

나. 대상처

조사대상 전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상처 선정기준

- 1) 소비자 고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 2) 타조사원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내에서 대표적 점포를 선정한다.
-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가) 도매점포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 하는 점포

다) 통신 판매점

라) 중고품 판매점

마) 영업상태가 불량한 점포

바) 중앙에서 지정하지 않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라. 보조 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 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 참고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개의 보조 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절일 때
-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 휴업

마.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고 신규가격을 3회 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 된 경우
- 4) 조사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등인데 신규대상처의 선정은 대상처 선정기준에 의함은 물론 지도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조사 시점

가.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과람료, 납입금, 방세를 제외한 337 품목)

나.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과람료 (2 품목)

다.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월 5일) : 납입금, 방세 (10 품목)

조사일이 공휴일, 휴시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사일이 명절 (추석, 성탄절 등) 인 경우에는 2일전에 조사하되 앞당긴 조사일이 휴시일, 공휴일이면 다시 1일전에 조사한다.

“ 예 ”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사한다.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에 조사한다.

6. 조사 방법

타계식 면접 조사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7. 조사 요령

소매물가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만, 통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납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 매스콤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시황에 밝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종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는다.

8. 품질 품목 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질로 처리한다.

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처에서 일시 품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순가격에 등락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값이 전기에 100원이었고 금기에 품질인 경우 보조대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20원이고 이 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20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7.0cm) 다른 규격의 갈치(90cm)만 출회되고 있을 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원이고 90cm의 가격이 150원이었는데 금기가격도 150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나 금기 90cm 가격이 180원이라면 등귀 비율이 같다고 보아 $(100원 \times \frac{180}{150} = 120)$ 120원이 금기 가격이다.

9.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소매 물가조사표

1) 조사가 끝나면 가격원부에 의하여 가격을 이기하고 등락 차액은 하락일 경우에만 차액앞에 △표를 하고 등락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2) 환산가격을 기입할 때는 원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

용을 비교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3)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총정도 크기로 아랫부분에 기입하고 정정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횡선을 긋고 날인한다.

2	3	5	6		△	2	0
						<u>2</u>	<u>5</u>

4)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이 형성되는 전기료, 담배 등 27개 중앙 조사품목(비교란 ☆표)은 물가통계과에서 직접 조사하므로 조사표에 가격을 기재해 서는 안된다.

5)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6) 맨 후면의 물가동향란에는 시황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영화관람료 조사표

1)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만을 기입하며 대작이나, 흑백영화, 쇼는 제외한다.

3) 방화와 외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금액을 기록하며 특히 합작영화는 방화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상영일자에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5)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입장세 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제외시킨다.

6) 1매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조사한다.

다. 방세 조사표

1) 조사구 번호와 조사가구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것만을 조사하며 방이 들이거나 점포가 부설된 것은 제외시킨다.

3)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란의 정기가격의 착오가 없도록 대조 확인하여 기록한다.

4) 전분기와 금분기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등락사유(새로 전입 또는 수리등)를 명백히 기입한다.

5) 삭월세의 경우 보증금 잔액은 매월 지불액의 3배를 제한 금액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기록토록 한다. 예컨대 50,000원 보증금에 5,000원의 삭월세(10개월)인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보증금이 35,000원이 된다.

6) 세의 종류가 동일가구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히 전분기 가격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예컨대 전분기에는 200,000원 전세로 있다가 금분기에 100,000원 보증금에 매월 5,000원씩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에는 전세의 보증금란에 200,000원, 금분기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란에 100,000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원을 각각 기록하고 그 변경사유를 등락사유란에 명백히 기재한다.

7) 대상가구를 조사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라. 납입금 확인서

1)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 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한다.

3) 중·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4)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과계(국문과 우선) 3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조사표류 발송

가. 조사표 발송

조사원은 조사시점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지도원의 확인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증양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요하므로 조사원의 일신상 사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조사원 유고시에는 지도원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질의조회 응신

1) 전화에 의한 질의나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다.

2) 질의조회, 응신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1 . 명 부 작 성

가. 가격조사부 (가격원부)

조사원은 우선적으로 가격조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상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즉시 가격조사부를 정정 기입하여 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상처 명부

1) 조사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되 품목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구의 조사품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대상처 명부

조사표상의 품목순서대로 기입하되 당해 조사구에서 조사하는 품목만 기입하므로 대상처별 명부의 품목총수 및 대상처수는 일치되어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는 조사원이 비치한다.

부 록

I. 품목 및 품질규격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10101	일 반 미	정 미, 중품	8kg	
10102	단 일 미	정부방출미	8kg	☆
10103	혼 합 미	정부방출미	8kg	☆
10104	찰 쌀	정 미	8kg	
10105	보 리 쌀	쌀보리	7.65kg	
10106	밀	참 밀	7.5kg	
10107	콩	백 태	7.5kg	
10108	팥	적 두	8.33kg	
10109	녹 두	흑갈색	8.33kg	
10110	좁 쌀	차 조	7.89kg	
10111	수 수 쌀	차수수	7.83kg	
10112	밀 가 루	중력분 2 등품, 제분율 77%, 2.2kg들이 (상표지정)	1 포	
10201	쇠 고 기	정 육	600g	
10202	돼 지 고 기	정 육	600g	
10203	닭 고 기	육계 잡아서 털뽑은것 내장제거 1마리정도	1kg	
10301	조 기	생선길이 30cm (우)	1마리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10302	갈 치	생선몸길이 70cm 정도	1마리	
10303	생 명 태	생선길이 45cm 정도 (우)	1마리	
10304	고 등 어	생선길이 35cm 정도	1마리	
10305	꽂 치	생선길이 30cm 정도	10마리	
10306	가 자 미	생선길이 30cm정도, 폭 15cm정도	1마리	
10307	배 구	생선길이 65cm, 3.5kg정도	1마리	
10308	병 어	생선길이 25cm 정도	1마리	
10309	물 오 징 어	생선 몸길이 25cm 정도	10마리	
10310	굴	싱싱한것	375g	
10311	조 개	껍질깎것, 싱싱한것	375g	
10401	굴 바	길이 30cm정도, 10마리	1두름	
10402	마 른 멸 치	황백색 길이 5cm 정도	375g	
10403	마 른 오 징 어	몸길이 25cm 정도(주문진산)	20마리	
10404	복 어	황태길이 40cm 정도	1마리	
10405	새 우 젓	추젓	375g	
10406	멸 치 젓	완전히 삭은것	375g	
10501	달 갈	환색, 대란 개량 50g 정도	10개	
10502	분 유	서울분유 450g들이	1통	
10503	연 유	서울연유 397g들이	1통	
10504	목 장 우 유	각지방 우유협동조합제품 180cc 들이 (고정배달)	1병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비고
10505	버터	서울버터 450g	1개	
10601	무우	재래종, 잎없는것 3개정도	3.75kg	
10602	배추	호배추	3.75kg	
10603	양배추	겉껍질 벗긴 것	3.75kg	
10604	파	개량파, 머리둘레 3cm 정도	3.75kg	
10605	양파	3개정도	375g	
10606	시금치	신선한 것	375g	
10607	콩나물	길이 5cm 정도	375g	
10608	상치	일상치	375g	
10609	당근	2개정도	375g	
10610	오이	개량종, 애오이, 길이 25cm정도 (개당 120g정도)	10개	
10611	호박	애호박 600g정도	1개	
10612	가지	길이 25cm 정도	10개	
10613	도마도	2개 정도	375g	
10614	감자	흰색 25개 정도	3.75kg	
10615	고구마	15개 정도	3.75kg	
10616	도라지	껍질 벗겨 쪄낸것, 싱싱한것	375g	
10701	김	개량김, 검정색	10장	
10702	미역	단각 (중품:15cm x 75cm정도) (상표 지정)	1장	

품목번호	품 목 별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10703	다 시 마	말린것	375 g	
10801	고 추	재래종, 완전히 마른 것	600 g	
10802	고 찻 가루	중가루(교봉)	100 g	
10803	마 늘	마른것, 직경 5cm 정도	1 접	
10804	천 일 염	국산 1등급염(교봉)	2 l	
10805	제 제 염	국산, 교운소금(교봉)	2 l	
10806	참 깨	흰 색	1 l	
10807	참 기 림	공장제품	0.18 l	
10808	채 종 류	유채유	0.18 l	
10809	콩 기 림	해표(동방유량), 플라스틱 병 90.0ml 들이(KS 표시품)	1 병	
10810	들 기 림	공장제품	0.18 l	
10811	설 탕	백설탕(제일제당) 비닐포장 500g 들이(KS 표시품)	1 포	
10812	구 루 타 민 산 소 다	해삼복합조미료미원(신선로표) 비닐포장 500g 들이	1 포	
10813	간 장	샘표(진간장) 900mm 들이	1 병	
10814	고 추 장	샘표 캔포장 450g	1 통	
10815	된 장	비닐포장 500g(상표지정)	1 포	
10816	생 강	10개정도	375 g	
10817	식 초	화영식초, 유리병 100ml 들이	1 병	
10818	후 찻 가 루	캔포장 100g 들이(상표지정)	1 통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비고
10901	두부	150g 정도 (공장제품)	1포	
10902	라면	삼양 쇠고기라면, 120g 들이	1봉	
10903	국수	공장제품	375g	
10904	당면	순녹말	375g	
10905	단무지	왜무우	375g	
10906	마아가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 마아가린) 225g 들이	1개	
10907	소시지	진주소고기혼합어육 소시지 (진주제품) 비닐포장 110g 들이	1개	
10908	생선통조림	꽂이통조림, 425g 들이 (상표지정)	1통	
10909	과실통조림	복숭아통조림, 425g 들이 (상표지정)	1통	
11001	홍옥	개당 180g 정도	10개	
11002	국광	개당 200g 정도	10개	
11003	배	개당 450g 정도	10개	
11004	복숭아	백도, 개당 250g 정도	10개	
11005	포도	흑갈색	375g	
11006	감	홍시, 개당 150g 정도	10개	
11007	곶감	곶이당 10개	1곶이	
11008	밥	죽은 것 (고분)	1ℓ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비고
11009	밀 감	제주산, 개당 100g 정도	1개	
11010	바나나	수입품	375g	
11011	참 의	은천참의(나이론 참의) 개당 600g 정도	10개	
11012	수 박	개당 5kg 정도	1개	
11013	딸 기	개량종	375g	
11101	크림 빵	삼립특제 단팥빵 65g	1개	
11102	식 빵	삼립식빵 800g (비닐포장)	1개	
11103	카스텔라	콘티 46g (비닐포장)	1개	
11104	견 빵	100g 들이(상표지정)	1봉	
11105	드롭스	롯데 다이아캔디 80g	1봉	
11106	비스켓	오리온 만만 비스켓 130g 들이	1봉	
11107	샌베이	보통품	375g	
11108	카라멜	롯데 하이소프트 밀크카라멜 16개입	1봉	
11109	초코릿	해태 나하나 초코릿 28g	1개	
11110	검	롯데 쥬시후레쉬 (6개)	1갑	
11111	크랙카	오리온 크랙카 (동양제과) 60g	1봉	
11112	떡	인절미	600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11113	땅 콩	볶은것, 속껍질 있는것 (고봉)	1ℓ	
11114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 110cc	1개	
11115	아이스캔드	빙고 아이스바 60cc (상표지정)	1개	
11201	콜 라	코카콜라 190mℓ 들어	1병	
11202	사 이 다	칠성사이다 340mℓ 들어	1병	
11203	쥬 스	환타 355mℓ 들어	1병	
11204	코 오 피	다방 판매품	1잔	
11205	홍 차	다방 판매품	1잔	
11206	밀 크	다방 판매품	1잔	
11207	유 산균 음료	야쿠르트 65mℓ 들어 고정배달	1병	
11301	맥 주	오비 500ℓ 들어	1병	
11302	소 주	진로 25도 360mℓ 들어	1병	
11303	청 주	백화수북 특급 1,800mℓ 들어	1병	
11304	약 주	주류 판매점 판매품	2ℓ	
11305	탁 주	주류 판매점 판매품	2ℓ	
11306	포 도 주	진로포도주 335mℓ 들어	1병	
11401	실 링 당	1급 대중식당	1그릇	
11402	냉 면	1급 대중식당	1그릇	
11403	비 빔 밥	1급 대중식당	1그릇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11404	짜 장 편	1급 중화요리점	1그릇	
11405	우 동	1급 중화요리점	1그릇	
11406	잠 빵	1급 중화요리점	1그릇	
11407	오 프 라 이스	1급 대중식당	1그릇	
20101	방 세 (전세)	적벽돌 또는 목조 기와집 부엌 있는 온돌방 1개	※	
20102	방 세 (월세)	"	1개월	
20201	도 배 지	벽지 중질지 3색도 두루마리, 53cm × 500cm	1필	
20202	창 호 지	전주산, 기계지, 표백 (20장)	1권	
20203	비 닐 장 판 지	럭키 비닐제품 8자방 1칸용 럭키하이펫트 2mm 137cm × 485cm	1장	
20204	종 이 장 판 지	황색 4배지 105cm × 90cm정도 (전주산)	1장	
20205	시 멘 트	일반용, 40kg들이 (상표지정)	1포	
20206	관 유 리	한국유리공업제품 투명, 두께 2mm (1명)	918cm ²	
20207	페 인 트	체비표 (건설화학제품), 흰색, 유 광, 외부용 1급품 4ℓ들이	1통	
20208	합 석	별표 (일신산업), #31 (두께 0.23mm) 90.9cm × 181.8cm 평판	1장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20209	스 레 이 트	한국스레이트제품 두께 6.5cm 72.72cm × 181.8cm 석면, 소골 (11.5) (KS 표시품)	1 장	
20210	합 판	나왕합판 90.9cm × 181.8cm (3자 × 6자) 두께 3.6mm	1 장	
20211	벽 들	적벽돌 21cm × 6cm × 9cm	10 장	
20212	기 와	시멘트제품, 검정색 30.3cm × 30.3cm	10 장	
20301	은 수 저	성인용 70%은, 무게 75g 정도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2	스 테 인 레 스 수 저	성인용, 프레스 제품,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3	주 발	스테인레스 제품 성인남자용, 대접 포함, 단순무늬, 두께 1.5mm (상표지정)	1 벌	
20304	양 은 술	직경 30cm 뚜껑포함 (상표지정)	1 개	
20305	남 비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cm (상표지정)	1 개	
20306	접 시	직경 20cm 무늬단조 (상표지정)	1 개	
20307	컵	보통품, 유리제품, 1홉7작들이 8개 (상표지정)	1 조	
20308	주 전 자	선학표,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2ℓ들이 (KS 표시품)	1 개	
20309	후 라 이 팬	범랑제품, 직경 25cm 정도	1 개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비고
20310	코오피셋트	행남사, 은하수무늬, 유색 6벌 1등급품	1 조	
20311	버킷	프라스틱제품 15ℓ 들이 두켤 포함 (상표지정)	1 개	
20312	항아리	오지, 유광, 손잡이 달린것, 뚜껑 제외 40ℓ 들이	1 개	
20313	세숫대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cm (상표 지정)	1 개	
20314	밥상	자개상 (홍패, 민무늬) 피나무 45cm × 60cm × 28cm	1 개	
20315	거울	45.5cm × 90.9cm (유리크기), 호 마이카테 (폭 5cm, 두께 2cm) 유리두께 2mm	1 개	
20316	탁상시계	세이코 (한국시계제품), 코로나형 (원형)	1 개	
20317	벽시계	" " " 4P-823형	1 개	
20318	전기다리미	자동열조정장치 부착 100V- 500W (상표지정)	1 개	
20319	백열등	투명 100V-30W 일반조명용 (상표지정)	1 개	
20320	형광등	번개표, 주광색, 갖제외 20W, 일반조명용 (KS표시품)	1 개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비고
20321	책상	철강제품, 외소재책상, 윗설함1개, 면측설함 2개, 1,065mm (W) × 760mm (D) × 750mm (H) (상표지정)	1개	
20322	의자	평의자(철제품, 팔걸이 및 컷 손있는것) 높이 45cm	1개	
20323	자전거	3,000 리호 표준형(26인치), 라이트와 거울부착	1대	
20401	텔레비전 수상기	금성사제품, VT816-B형, 48.2cm (19인치) 220V겸용	1대	
20402	선풍기	금성사제품 FD 3518 H형 35.56cm (14인치)	1대	
20403	냉장고	대한전선 (TR 1607)형 160ℓ	1대	
20404	라디오	금성사제품, RF 188형 휴대용(건전지용) FM 겸용	1대	
20405	전축	별표모델-5444	1대	
20406	녹음기	금성사제품 모델RE 510, 휴대용	1대	
20407	믹서	금성사제품 M-1201형	1개	
20408	피아노	삼익피아노, 호루겔 WG-9(건반 88개)	1대	
20409	캐비닛	한국제품, 철강제양복장, 양문, 안설함 2개 (페인트 도장) 177cm × 96cm × 59cm	1개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비고
20410	재봉틀	드레스미싱, MSBD형, 케비넬형 (부광)	1대	
20411	난로	한일전기(주)제품, 한일 OH-30	1대	
20412	공로	석유용량 4.2ℓ (상표지정)	1대	
20413	전화기	M-70형 다이알식, 흑색	1대	
20501	수도료	가정용전용 전월간 기본요금포함, 서울, 부산(30t), 대구, 인천, 대전, 광주(25t), 그외(20t)	※	
20601	오물수거비	일반가정, 1등급	1개월	
20602	인분제거비	" 18ℓ들이	1통	
20603	숙박료(호텔)	음류, 독방, 침대, 1인1박, 독탕 부설 식사제외	1일	
20604	숙박료(여관)	1류, 1인1박, 독방, 식사제외	1일	
20605	전공임	숙련공 급식제외	1일	
20606	목수임	" "	1일	
20607	미장이임	" "	1일	
20608	철장이임	" "	1일	
20609	잡부임	급식제외	1일	
30101	전기료	가정용(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30KWH	☆
30201	연탄	소형 22공탄 직매점 판매가격 (배달료제외) (상표지정)	10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30202	가 스	유공제품, 가정용, 프로판가스 (배달료와 통값제외)	10kg	
30203	숯	참나무 숯, 흑탄	100g	
30204	석 유	유공제품, 등유	2ℓ	
30301	성 냥	가정용 대형 8각형 750~800 개피 들어 (상표지정)	1통	
30302	양 초	6개들어, 갑당 300g 정도 (상표 지정)	1갑	
40101	마춤신사복 (여름용)	제일모직, 트로피칼 (울 40%, 폴 리에스터 60%) 인견받침	1벌	
40102	마춤신사복 (겨울용)	제일모직, 순모복지 (해링본) 52S/2 인견받침	1벌	
40103	마춤속내복 (여름용)	신경직물, 스카이본디 합성직물 팔없는 원피스, 나이론 다후다받침	1벌	
40104	마춤속내복 (겨울용)	신경직물, 범포데리칼 저지울 100% 투피스, 나이론 다후다 받침	1벌	
40105	마춤코트	제일모직, 슈퍼코트, 남자용울 40%, 폴리에스터 60%인견 받침	1벌	
40106	마춤오바	경남모직, 여자용순모, 킨칠라, 인견받침	1벌	
40107	기성신사복 (여름용)	울 40%, 폴리에스터 60% (삼성물산)	1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40108	기성복사복 (겨울용)	울 40%, 폴리에스터 60% (삼성물산)	1벌	
40109	한복	성인 여자춘추용, 스카이론 상하 각각 3겹(통시아에 당사섬), 기성복	1벌	
40110	학생복 (여름용)	남자 중학생용, 상의는 TC(65% 폴리에스터 35%면), 하의는 T.R(50% 폴리에스터, 50% 레이온) 기성복 4호	1벌	
40111	학생복 (겨울용)	남자 중학생용, 에리트(제일합섬)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나이론다후다 받침, 기성복 4호, 흑색	1벌	
40112	아동복	TC(혼방) 반팔원피스, 유색 기성복(8-9세용)	1벌	
40113	잠바	카시미아, 춘추용, 성인남자용, 작크부착, 긴팔, 나이론다후다 안받침, 기성복	1매	
40114	긴팔 와이셔어츠	남자성인용(폴리에스터 65%, 면 35%) (상표지정)	1매	
40115	반팔 와이셔어츠	남자성인용(폴리에스터 65%, 면 35%) (상표지정)	1매	
40116	남방셔어츠	남자 성인용 반소매(폴리에스터 100%, 유색, 기성복)	1매	
40117	면내의	남자 성인용, 겨울용상, 하 38 S 무색(상표지정)	1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40118	화학 사내 의	남자성인용, 저울용 상, 하 유색 폴리아크릴 100%(상표지정)	1 벌	
40119	런닝 셔어즈	남자 성인용, 반팔 38 S 흰색, (상표지정)	1 매	
40201	광 목	면 16S×16S 폭 88.9cm 포백 안된것(1마) (상표지정)	90.9cm	
40202	포 플 린	면 30S×30S, 폭 111.76cm 남염(상표지정)	90.9cm	
40203	이 불	실크 원단, 한일샤넬(2kg정도) 2인용(한일합섬)	1 장	
40204	나이론태피터	나이론 100%, 70테니엘 폭 44 인치(111.76cm) 유색	91.4cm	
40205	재 봉 사	TC(폴리에스터 65% 면 35%) 60S/S, 길이 5,000m 흰색 (상표지정)	1 권	
40206	화 학 사	비들기표(태광산업) 아크릴 에릭 스란 100%, 10S/2 편물용 유색	453.6 g	
40207	솜	면, 지대 포장, 3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 포	
40301	마춤남자구두	복수혁, 나이론창, 플라스틱굽, 검은 색	1 켤레	
40302	마춤여자구두	복수혁, 나이론창, 플라스틱굽	1 켤레	
40303	남자 고무신	말표, 흰색 260mm 은하수(KS 표시품)	1 켤레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40304	여 자 고 무 신	말표, 흰색, 흰바닥 230mm 9,000백여대 (KS표시품)	1 켤레	
40305	운 동 화	말표, 남학생용, 면자, 흑색, 스파이크형 230mm	"	
40306	비 신	말표, 남자성인용, 반장화, 흑색 고무제푼 260mm	"	
40307	비 닐 화	왕자표, 합성피혁, 고무창, 밭색 260mm	"	
40401	남 자 양 말	성인용, 추동용, 나이론 20% 울 30%, 테드론 50%, 단색 (상표지정)	"	
40402	여 자 양 말	추동용, 나이론 100%, 단색 (상표지정)	"	
40403	아 동 양 말	추동용, 카바양말, 나이론 100% 단색 (8-9세용), (상표지정)	"	
40404	스 타 킹	반달표, 살색나이론 100% 8분 (무늬, 뒷출없음)	"	
40405	허 리 띠	소가죽 (속피) 무쇠장식, 폭 2.5cm 정도	1 개	
40406	장갑	면사 23S 흰색, 작업용 중품	1 켤레	
40407	넥 타 이	동아견직, 폴리에스터 50%, 아세 테이트 50% 최신형	1 매	
40408	머 플 러	남자성인용, 본견 40S 단사 (110cm x 30cm) 중품	"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40409	모 자	중고교생용, 울 70%, 나이론 30%, 방모사 나이론 안발침, PVC 쉹	1 개	
40410	가 방	남자중학생용, 100% PVC 면침착 (스폰지식)	1 개	
40411	모 포	한일합섬, 일반용 울런모포 바닥은 면 30%, 아크릴 70% 170 cm × 220 cm	1 매	
40412	수 건	면 23S, 80 cm × 32 cm 정도, 유색 (상표지정)	1 매	
40413	우 산	협림제품, 흙살 10개, 2단 매드론, 검은색	1 개	
40414	양 산	협림제품, 흙살 10개, 3단 (나이론 100%) 유색	1 개	
40415	손 목 시 계	오리엔트 21석, 남자용 자동, 날자, 요일, 방수, 방충, 모델 NO 5065, 스테인레스케이스 국내조립품	1 개	
40416	금 반 지	순금 (99%) 3.75 g 무늬단조 (수공업포함)	1 개	
40417	핸 드 백	합성피혁제품, 최선중형 보통장식, 단색 (상표지정)	1 개	
40418	안 경	남자보안용, 국산태 (세루로이드 6 mm), 수입알 (국내가공) 슈퍼겔 갈색	1 개	
40501	양 복 세 탁 료	신사복 상. 하 드라이크리닝 (다림질포함)	1 회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관리	단위	비고
40502	와이셔츠	성인용(다림질포함)	1회	
40503	세탁료	부인용, 춘추용 환복(화학사 옷 감 3겹), 수공임	1벌	
40504	의복수선료	신사복, 짜집기 3cm 정도	1회	
40505	신수선료	남자구두 1켤레, 뒤틀창수선료(재 료값 제외)	1회	
40506	구두닦이	남자용 단화, 검정색, 보통광택	1회	
50101	영양제	비롬(유한양행) 100정들이	1병	
50102	감기약	노바킹 당의정(동광약품) 10정 들이	1병	
50103	소화제	부체표 활명수(동화약품) 60ml 들이	1병	
50104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중근당제약) 250mg	10캡슐	
50105	해독강장제	박카스 D(동아제약) 100CC 들이	1병	
50106	구충제	버막스(유한양행) 6정들이	1갑	
50107	외상약	마큐롬액 15CC들이	1병	
50108	진찰료	종합병원, 보통진료	1회	
50109	입원료	종합병원 일반환자 2인용(식 사포함 약대제외)	1일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50110	분 만 료	종합병원 2박3일 2인용실 입원, 경산, 정상분만(식사포함, 약대제외)	1 회	
50111	엑 스 레 이 촬 영 료	종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순촬영(14인치×14인치)	1 회	
50112	인 삼	금산삼 50편(1등급:松) 300g	1 상사	
50201	화 장 비 누	다이알비누 동산유지 100g	1 개	
50202	세 탁 비 누	일반가정용, 4호 550g(상표지정)	1 개	
50203	가 루 비 누	럭키하이타이, 비닐포장 100g 들이	1 포	
50204	치 약	럭키 치약, 100g들이(중형)	1 개	
50205	칫 솔	럭키 777 성인용(케이스포함)	1 개	
50206	화 장 크 림	아모레미보라 모이스란크림 130g (태평양화학)	1 갑	
50207	화 장 분	아모레미보라 웨이셜팩트 10g (태평양화학)	1 갑	
50208	화 장 수	쥬단학 새로본 모이스취 밀크로손 140ml(한국화장품)	1 병	
50209	포 마 드	단학 맨담포마드 60g (한국화장품)	1 갑	
50210	화 장 지	장미표 특제(원통형), 흰색	1 개	
50211	살 충 제	에프킬러 에어로졸(삼성제약) 수압분무식 300ml들이	1 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50212	면 도 날	도루코(한일공업) 10매	1 갑	
50213	이 용 료	성인(착유포함) 중류	1 회	
50214	고 데 료	성인여자(가발, 캣트료 제외) 중류	1 회	
50215	파 마 료	성인여자, 보통파마(B급) 중류	1 회	
50216	목욕료(성인)	남자, 일반 대중탕	1 회	
50217	" (아동)	일반대중탕(7세이하)	1 회	
50301	시내버스로	성인, 시내 1구간	1 회	
50302	시외버스로	포장도로, 일반여객	1 km	☆
50303	고속버스로	서울-각 도시간, 성인, 편도	1 회	☆
50304	택시료(기본)	시내, 기본요금(2km)	1 회	
50305	" (초과)	2km 초과요금	1 회	
50306	기차료(완행)	대인 40 km	1 회	☆
50307	" (급행)	대인, 보통급행 70 km	1 회	☆
50308	항 목 료	대한항공, 서울-도시간 성인편도	1 회	☆
50309	선 박 료	국내 여객운임, 성인, 3등실 20해리	1 회	☆
50401	전화료(기본)	가정용 1대, 시내 통화료	1 개월	☆
50402	" (도수)	가정용, 시내통화료	200 회	☆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50403	우편료 (국내)	통상우편 1종 (필서봉지, 20g 이내)	1 통	☆
50404	전 보 료	시외, 보통 10자 이내	1 회	☆
50405	항공료 (국제)	항공서간	1 통	☆
50501	국 민 학 교 교 과 서	4학년 1학기용, 국어, 산수, 사 생, 자연	※	☆
50502	중학교교과서	영어 (중1, 미들스쿨), 수학 (중1, 중등수학, 이성현저)	※	☆
50503	고 등 학 교 교 과 서	영어 (고1, 하이스쿨), 수학 (고1, 현대공통수학-이성현저)	※	☆
50504	국 민 학 교 육 성 회 비	가구당 1인 재학생분	1 개월	
50505	납 입금 (공중)	2학년생	1 분기	
50506	" (사중)	"	1 분기	
50507	" (공교)	"	1 분기	
50508	" (사교)	"	1 분기	
50509	" (국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 학기	
50510	" (사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 학기	
50511	" (전문)	기계과 4학년생	1 학기	
50512	유 차 원 비	보육료 및 기성회비	1 개월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50513	참 고 서	엣센스영한사전 (민중서관) 3 × 6 판 인도지, 비닐표지, 1,680 페이지	1 권	☆
50514	입 사 학 원 비	대학 입시준비, 영어단과반 1일 100 분강의 보통강사수강료	1 개월	
50515	자 동 차 학 원 비	지정자동차학원, 본과 영업반 10 주과정 수강료 (입학금, 책값 면허수수료 제외)	"	
50516	양 재 학 원 비	재단과, 4 개월과정 수강료 (입학금 제외)	"	
50517	도 서 관 비 (국공립)	성인, 일반 열람실	1 회	
50518	도 서 관 비 (사설)	학생, 일반 열람실	1 일	
50601	볼 펜	모나미 153, 청남색 KS표시품	1 개	
50602	연 필	문화연필 사파이어 HB향나무 (지우개부착)	1 다스	
50603	만 년 필	파일롯드 55G2형	1 개	
50604	노 트 (대)	모조지 48매 (표지포함) 18.6 cm × 26.5 cm (상표지정)	1 권	
50605	" (소)	갱지 14매 (표지포함) 14.5 cm × 20.5 cm (상표지정)	1 권	
50606	도 화 지	마나라지 (45.4kg) 1면사용, 수채 화용, 8절지	1 장	
50607	시 험 지	갱지 16절지	20 장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50608	봉 투	모조지제품, 흰색	10 장	
50609	크 레 파 스	왕자파스, 굵은 20색 (6cm 정도) (왕자문구)	1 갑	
50610	잉 크	청색, 파일롯트잉크 30cc들이	1 병	
50701	신 문 구 독 료	한국일보, 가정배달	1 개월	☆
50702	주 간 지	주간한국, 32면	1 부	☆
50703	여 성 지	주부생활 (당월분)	1 권	☆
50704	대 중 지	아리랑 (당월분)	1 권	☆
50705	아 동 지	소년중앙 (당월분)	1 권	☆
50706	총 합 지	신동아 (당월분)	1 권	☆
50707	문 예 지	현대문학 (당월분)	1 권	☆
50708	영 화 과 람 료 (방 화)	총천연색, 상영시간 100분정도 입장세 포함 (각종 구호금 제외)	1 회	
50709	영 화 과 람 료 (의 화)	" "	1 회	
50710	텔레비전시청료	1 대	1 개월	☆
50711	고 궁 입 장 료	고궁 및 유원지, 성인	1 회	
50712	사 진	명함판, 흑백 3-4매 (상류사진 판)	1 조	
50713	흑 백 필름	대한필림 폭 35mm 20장 촬영 용	1 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50714	칼라 필름	코닥칼라 20장 촬영용, 85mm 국내제본	1통	
50715	장난감	유색, 고무용, 직경 18cm 정도	1개	
50716	삼륜자전거	어린이 4-5세용, 1인용, 보통 장식	1대	
50717	운동기구	축구볼, 보급용(중양구), 소가죽 32피	1개	
50718	레코드판	LP형, 지름 30cm, 스테레오, 국내 일류가수 신곡 최신취입	1장	
50719	생 화	국화꽃 싱싱한것 직경 5, 6cm	1송이	
50801	담 배	각종권련	갑	☆
50901	행정수수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 통	
50902	행정수수료 (호적초본)	호적초본 발급	1 통	
50903	행정수수료 (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	1 통	

II.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쌀~상품과 중품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대상처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계열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품질 규격을 조사할 것.

어개류~생선의 길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 두었다가 중량 단위로 판매하는 대상처의 올바른 가격을 포착할 것이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중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환산할 것

목장우유~협동조합에서 고정적으로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제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미역~지역별 산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나 반드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조사할 것

마늘~규격에 맞는 적당 무게를 확인하여 조사할 것

예컨대 3.75 kg(1관)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적당 무게를 파악하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함.

꽃감~반드시 꽃이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할 것이며 짙으로 묶어서 포장한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과자류~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감량에 유의하여 그 사유 및 가격을 정확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밀크~목장 우유와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약주~용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병술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방세~방세조사의 대상은 방이므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변동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동일한 방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경우나, 전세가 월세(보증부월세, 식월세, 월세)로 변경되어도 대상처는 변경되지 않으며 변동된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즉 A가 전세로 200,000원에 세들어 있다가 전출하고 B가 250,000원에 전세 입주하면, 조사표에는 가구주 성명을 B로 기입하고 50,000원 인상된 것으로 보고 등락사유란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사실을 기입하며, 200,000원 전세로 있던 A가 보증금 100,000원에 월세 5,000원으로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는 전세 200,000원으로 기입하고, 금분기에는 보증부월세란에 보증금 100,000원 매월 지불액 5,000원으로 기입하고 등락사유란에 세의 종류변경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비, 시설비, 기타 영선료 부과징수는 제외된다.

오물수거비~지방별로 1등급(월수입, 재산세, 전평등 택일)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호텔료~음류란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관광호텔이 아니고 내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을 말한다.

연탄~가정용 소형 구멍탄으로서 직매점 점두가격을 조사한다.

배달료는 거리의 원근 및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남자구두~복수형이라 함은 인조합성 피혁이 아닌 우피를 말하며 기

성화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비신~단추나 작크가 부착되지 않은 반장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손목시계~남자용 오리엔트 21 석으로서 요일과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 (카렌다형) 자동이며 국내 조립품을 조사한다.

금 반지~순도 (99%)를 유지하며, 수공임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무늬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공임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파복류~피복 및 장신구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분 (수, 데니엘, 혼방의 경우 혼합비율등) 색채, 형태 등에 항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수(手)와 데니엘(Denier)은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 모직물에 데니엘은 생사, 나이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파운드(453.6g)로 길이 840야드(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하며, 모직물의 경우는 1kg의 원모로 1,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한다.

데니엘~나이론 섬유 1g으로 9,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굵기를 말하며, 생사 450m 무게가 0.05g일때 1데니엘이라 한다.

진찰료~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보통 초진료를 조사한다.

따라서 특진료, 재진료를 조사해서는 안된다. 이하 입원료, 분만료, 엑스-레이 촬영료도 같은 종합병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입원료~일반환자란 응급의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며,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배급하는 식사는 포함되지. 병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약값은

제외한다.

분만료~경산이란 초산이 아닌것을 말하며, 정상분만이란 특수진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특별히 투입되는 약값은 제외되며, 다만 지혈제 등 분만료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모든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투입되는 약값은 분리 포착 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2박3일 입원이란 정상적인 산전, 산후 처리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입원료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간혹 전문병원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의 분만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으며, 만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남아분만에 대한 산모측의 팀으로 간주하며 그 차액은 고려될 수가 없다.

이용료~중류라 함은 관광호텔 등의 특수 이발소가 아닌 일반 이발소를 말하며, 보통의 착유를 포함하며 특수 서어비스(숄튼손질, 맛사지 등)로 인한 팀은 해당 업소가 이용료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고려될 수 없다. 이하 미용료도 같다.

목욕료~터키탕, 사우나독크 등 특수 목욕탕이 아닌 일반 대중탕을 조사대상으로 남자 목욕료를 조사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7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에 따라 성인, 아동, 유아를 각각 구별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요금을 조사한다.

예컨대 13세 이상을 성인, 6~12세까지가 아동 5세 이하가 유아로 구분되면, 유아의 목욕료를 조사하며, 10세 이상을 성인 5~9세까지가 아동, 4세 이하가 유아이면 아동의 목욕료를 조사한다.